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2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2나23247 양수금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☆☆☆☆
대표이사 ○○○
지배인 ○○○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★★★★★★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★
★★★★★★의 관리인 ●●●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○, 담당변호사 ○○○
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. 1. 19. 선고 2011가합8095 판결
변 론 종 결 2013. 3. 7.
판 결 선 고 2013. 3. 21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3.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8,827,8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(2011. 10. 27.)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가구제조업자인 주식회사 ○○○○○○(이하 '○○○○○○○'라 한다)는 2010. 4. 15.경 피고와 사이에 ◇◇◇◇ ◆◆◆◆ 현장에 가구를 제작·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, 그 무렵부터 2011. 1. 31.경까지 가구를 납품하였다.

나. 한편, ○○○○○○는 2011. 7. 11. 원고와 사이에 ○○○○○○가 주식회사 ★★ ★★★★★(이하 '★★★★★★'라 한다)에 대하여 갖는 128,827,875원의 물품대금채 권(이하 '이 사건 채권'이라고 한다)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 약정 을 맺은 후, 2011. 9. 5. ★★★★★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, 그 후 원고 는 2011. 10. 20. ★★★★★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송을 제기하였다.

다.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★★★★★에 대한 2011회합148 회생사건에서, 2011. 11. 21. 11:00 회생채무자 ★★★★★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며 ●●● 을 회생채무자 ★★★★★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고, 이후 관계인집

회를 마친 다음, 2012. 7. 13.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렸다.

라. 한편 회생채무자 ★★★★★★의 관리인 ●●●은 2012. 2. 21.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★★★★★★의 소송을 수계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, 5호증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, 이에 대하여 피고는, ① 제1심 계속 중 ★★★★★★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②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으니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룬다.

나. 관계 법령 : 별지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(1) 소송절차 중단사유의 간과에 대하여

소송 계속 중에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,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,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,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소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으면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,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와 같은 상소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

2003. 11. 14. 선고 2003다34038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제1심 계속 중에 2011. 11. 21. ★★★★★★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,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, 한편, 회생채무자 ★★★★★★★의 관리인 ●●●이 사실상 제1심 판결을 송달받아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종전 소송절차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, 소송절차 중단사유를 간과하여 위법하다는 상소사유는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 여부에 대하여

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'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서 보건대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★★★★★★★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생긴 회생채권이라 할 것인바,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,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회생채무자인 ★★★★★★★는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,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며,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

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	판사	조인호
	판사	노행남
	판사	정인재

관계 법령

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제118조(회생채권)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.

1.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

제147조(회생채권자·회생담보권자·주주·지분권자의 목록)

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,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·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 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8조(회생채권의 신고)

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성명 및 주소
2.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
3. 의결권의 액수
4.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

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·당사자·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51조(신고의 의제)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·회생담보권·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.

제152조(신고의 추후 보완)

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하지 못한다.

1.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

제251조(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)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, 주주·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.
끝.